

2022년

유기질비료 · 토양개량제

지금 바로 신청하세요!

- 신청자격**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경영체
 - 신청자의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에 등록된 농지를 대상으로 지원
- 신청기간** 2021. 11. 9. ~ 12. 8.
- 신청장소** 농지 소재지 읍·면·동사무소(행정복지센터)
 - 농지가 여러 시·군·구에 있는 경우 각각의 시·군·구 농지 소재지 읍·면·동에 신청
 - 농지가 같은 시·군·구내의 2개 이상 읍·면·동에 있는 경우 그 중 하나의 농지소재지 읍·면·동에 신청
 - 농업인 편의를 위해 해당 농업인이 작성한 신청서를 **이장, 공급희망 농협, 작목반장** 등을 통해 관할 읍·면·동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.
- 제출서류** 유기질비료 공급신청서, 토양개량제 공급신청서 (읍·면·동사무소에 비치)



2022년 유기질비료 신청안내

- 지원대상(비료의 종류)**
- 유기질비료(3종) | 혼합유박·혼합유기질·유기복합비료
 - 부숙유기질비료(2종) | 가축분퇴비·퇴비

» 부숙유기질비료의 신청 물량은 10a당 2,000kg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.

지원혜택(보조금 지원금액)

구 분	유기질비료 (20kg/포)	가축분퇴비·퇴비(20kg/포)		
		특등급	1등급	2등급
보조금 (전환사업 보전금, 지방비 포함)	1,600원	1,600원	1,500원	1,300원
자부담	8,000원일 경우 ↓ 6,400원	4,000원일 경우 ↓ 2,400원	3,600원일 경우 ↓ 2,100원	3,300원일 경우 ↓ 2,000원

* 보조금은 1,300원~1,600원/20kg 이상으로 지자체별, 비종별, 등급별로 다를 수 있음. 원료명 및 원료투입비율을 꼭 확인하세요.

2021년 토양개량제 변경·추가신청 안내

- 신청대상** 2019년 2월~5월에 토양개량제 신청하지 못했거나, 신청내용에 변경사항이 있는 농업경영체
- 지원대상** 규산질, 석회질(석회고토, 패화석)
- 대상지역** 2022년 공급 읍·면·동

유의사항 | 과잉신청 후 미사용의사 표시 하지 않고 포기시 차년도 지원물량 축소 등 제재 부과

* 신청서류 등 자세한 사항은 농지소재지 읍·면·동사무소(행정복지센터)나 농협에 문의하시면 자세히 상담받으실 수 있습니다.